

2020년도 제3,4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

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(시험의 공고)에 따라, 2020년도 제3,4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27일

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 시험일시

가. 시험일자 : 2020. 12. 5.(토)

나. 시험시간 : 10:00 ~ 11:00(60분) * 수험생은 09:20분까지 시험실 입실

2 시험장소

가. 춘천권역 1개 시험장

- 남춘천중학교 (강원도 춘천시 충혼길 51)

※ 시험 응시표는 장소공고일(11.27.)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(<http://local.gosi.go.kr>) 로그인 후 ‘마이페이지’에서 출력 가능합니다.

3 응시자 준수사항

가.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

- 원활하고 안전한 시험 진행을 위해 모든 시험장은 시험전일 및 시험종료 후 철저한 소독관리를 할 예정이며, 수험생은 아래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- 「감염병예방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사전신청을 거쳐 관할보건소 등 보건당국과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(검사결과 음성), 별도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【 자가격리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(증상의심자) 별도시험 사전신청 안내 】

- 사전신청기간 : 2020. 11. 27.(금) ~ 12. 3.(목) 18시까지
- 제출서류 : 별도시험 신청서[붙임 1], 격리통지서 사본
- 신청방법 : 강원도 시험시행본부 사전 연락후, 이메일 송부
 - 연락처 : ☎033)249-2227, 2548, 2213 / 이메일 : kcg1009x@korea.kr
- ※ 시험방법 등은 향후 사전신청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
- 자가격리 신고자 중 신청 이후 격리해제 된 경우 일반시험실에서 시험 실시

- 시험장 방역 및 수험생 위생관리를 위해 **08:00 이후부터 입장이 가능**합니다.
- 시험장 입실 시 응시자 간 안전거리를 최소 1.5m 이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
-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, **마스크 미착용 시 시험장 입실이 불가합니다.**
 -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, 시험시간 중에도 착용하되, 응시자 신분 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.
- 모든 응시자는 시험실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 바랍니다.
 -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※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정후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은폐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소독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 이용 시에는 반드시 손 소독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, 손수건,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기침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-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(발열, 기침, 인후통, 호흡곤란 등)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.
- 시험실 환기를 위해 시험 시, 창문 등을 개방할 수 있으니, 따뜻한 옷을 지참 하시어 컨디션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퇴실 시, 인원 분산을 위해 저층부터 순차적으로 퇴실할 수 있으니,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퇴실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-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.

나. 일반사항

- **시험당일 09:20까지**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(시험당일 08:00 전에는 출입 불가)
 -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**응시표, 신분증,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, 수정테이프**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- * 시험당일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, 수정테이프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**
(시험 본부에도 비치하지 않으니, 응시자 본인이 필히 지참)
- 응시표 :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 → 마이페이지→응시표 출력
 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
※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
 -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,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(**수정액,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**)
※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함
-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단, 시험 전일까지 시험실에는 들어갈 수 없음)
 -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.
 - 응시번호에 따라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(타 시험장 응시자는 당해시험 무효 처리)
 - 가산점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으므로,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(2020.12.4.)까지 「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」 내 [마이페이지] → [가산자격증 등록] 선택 후 가산점 정보를 반드시 등록 또는 수정하시기 바라며, 부정확한 정보입력 또는 미입력 시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.
※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가산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(☏1577-0606)에 문의하시기 바라며, 필기시험 시행 전일(2020.12.4.)까지 유효하게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-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(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볼펜 뜯딱 소리, 반복적인 헛기침 등)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,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, 태블릿PC, 녹화기능이 탑재된 기기(안경 등), 스마트 시계, 무선호출기, MP3,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 등의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, 시험시간 중 휴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퇴실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,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계산·통신 등의 기능이 있는 시계(스마트 시계 등), 소리로 인해 타 응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계 등은 사용 불가
-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,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

다. 시험문제책 회수

- 제3,4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의 모든 과목은 강원도 자체출제로, 문제 및 정답을 비공개하며, 문제책은 회수합니다.

시험구분	비공개 대상 과목
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(10과목)	환경공학개론, 화학, 환경보건, 물리, 응용역학개론, 측량, 건축계획, 건축구조, 전자공학개론, 유선공학개론
제4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(3과목)	보건학, 역학, 미생물학

※ 강원도 자체출제 과목의 문제(책)를 절취, 훼손, 필사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라. 답안지 기재 및 표기

- 점수산출은 판독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.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<보기>의 올바른 표기 예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
- 특히,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,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,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(특점 불인정 등)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'●' 표기하여야 하며,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, 별도로 수정테이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수정테이프가 없는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 -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표기하였던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,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 **(단,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불가)**
※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
 - 적색볼펜, 연필,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답안지를 받으면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먼저 상단에 시험일자, 인적사항 및 필적감정용 기재란을 작성하셔야 합니다.
 -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단 기재(표기)사항을 빠짐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(표기)하여야 합니다.(교체 전 답안지는 폐기처리 됨)
 - 시험시작 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,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을 기재 후 '●'로 표기(1개) 하여야 합니다.
※ 인적사항 및 책형을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불이익(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)을 받을 수 있음
 - 필적감정용 기재란 예시문의 내용을 본인 필적으로 기재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.

-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일치하는지 여부, 문제책 누락, 인쇄상태 및 파손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**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표기**하여야 하며,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선택과목이 있는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.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으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답안지는 훠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■ ■ ■ ■ ■)를 절대로 훠손해서는 안됩니다.

마. 부정행위 등 금지
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- | |
|--|
| <p>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<p>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.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.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.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|
|--|

-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-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

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

가.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

-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 및 강원도청 홈페이지(<http://www.provin.gangwon.kr>) [도정마당]-[시험정보]란에 게시합니다.
 -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: 2020. 12. 23.(수) 예정
※ 필기시험 합격자 안내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.
-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 [합격/성적조회]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.
 -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조회 →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개
 -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조회 →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개

시험일시·장소 등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 7일 전에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합니다.